

2023년 기윤실 회원총회 회의록

1.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18:00~21:15

2. 장소 : 남대문교회

3. 재적 및 출석

- 임원 : 재적인원 32명 중 참석 13명, 위임 14명 (총 2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권혁률, 김홍섭, 박제우, 백종국, 송인수, 왕보현, 유해신, 이병주, 이의용, 정병오, 조성돈, 조주희, 조흥식 - 위임 : 강석창, 권장희, 김정태, 김종구, 방선기, 배종석, 손은실, 송태근, 이문식, 임성빈, 장동민, 정현구, 조수진, 지용근

- 회원 : 재적인원 662명 중 참석 33명, 위임 356명 (총 389명)

- 비회원 배석 : 13명

■ 의장(사회자) : 백종국 이사장

■ 안건 : 2022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3년 사업 및 예산 계획, 임원 개선, 정관 개정

[총회 개회]

▶ 백종국 의장이 정관 1절 10조¹⁾에 의거 임원 및 회원 점명을 하고, 임원 재적 32명 중 13명 참석, 14명 위임(총 27명), 회원 재적 662명 중 33명 참석, 356명 위임(총 389명)하여 정관 13조²⁾에 의거, 2023년 기윤실 회원총회 개회를 선포하다.

- 김현아 사무국장이 찬성, 반대, 질문 등 의사표시 방법을 안내하다.

- 백종국 의장이 회순 및 전 회의록 채택은 온라인 사전검토로 같음함을 안내하다.

[2022년 사업 · 결산 · 감사(회계/업무) 보고]

- 김현아 사무국장이 2022년 사업 · 결산 · 회계/업무감사 내용을 보고하다.

- 백종국 의장이 2022년 사업 · 결산 · 회계/업무감사 보고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고,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다.

- 백종국 의장이 2022년 사업 · 결산 · 회계/업무감사 보고에 대해 채택 여부를 묻다.

▶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하다.

[임원 개선]

- 백종국 의장이 사임 · 연임 임원 대상자를 소개하다.

① 사임 : 김경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지용근(지앤컴리서치 대표),

1) 1절 10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 임원과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1절 13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임 : 이사 - 강석창(미네랄바이오 회장), 감사 - 이병주(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대표)

- 백종국 의장이 임원 개선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다.

▶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2023년 사업 · 예산계획 보고]

- 정병오 공동대표가 2023년 사업 계획을 보고하다.
- 김현아 사무국장이 2023년 예산 계획을 보고하다.
- 백종국 의장이 2023년 사업 · 예산 계획에 대해 질문을 요청하다.
- 손봉호 자문위원장이 환경문제는 정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절약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다.
- 김현아 사무국장이 앞선 사업 계획 보고에서는 새로 시작한 사업을 주로 다루어서 관련된 언급이 없었으나 현재 자발적불편운동과 연대활동(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에서 환경 기후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과 절약에 관한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하다.
- 백종국 의장이 사업 · 예산계획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다.

▶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안건 1 : 정관 개정안]

- 김현아 사무국장이 정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정관] 제1절 총회 12조(의결)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현행 정관 조항

- ▲ 기윤실 정관 제1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 **임원**과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 ▲ 기윤실 정관 제13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한 사명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1) 정관 제13조의 총회 의사정족수인 '재적회원'에 정관 제10조의 총회 구성원인 '본회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총회 구성원인 회원은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되는데, 총회 정족수는 그보다 많은 **재적(전체) 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총회의 구성원과 총회 결의 정족수의 기준'이 서로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음.
- 2) 정관 제13조의 총회 의사정족수는 현재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이 입회 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총회 통지 및 출석 및 위임 의사를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와 회원에게 총회 통지를 하였으나 출석 및 위임에 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재적 회원의 과반에 달해 총회 개최를 어렵게 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총회의 성회요건인 의사정족수를 법인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

정관 개정안

- ▲ 기윤실 정관 제1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 ▲ 기윤실 정관 제 13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중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백종국 의장이 정관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고,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다.
- 백종국 의장이 정관 개정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다.
 - ▶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기타건의]

- 백종국 의장이 기타건의 사항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고,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다.

[폐회]

- 백종국 의장이 폐회 여부를 묻다.
 - ▶ 만장일치로 폐회에 동의하다.
- 2023년 회원총회를 마치다.

(끝)